

검 토 보 고 서

파주시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

□ 제안이유

공무원이 소속기관장과 근무환경개선, 업무능력향상, 고충처리등을 협의하고 그 이행을 보장하여 공무원의 복무상 권익보호와 국민에게 대한 봉사자로서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제정된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이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

□ 주요골자

- 설립기관의 범위(안 제 2조)
- 협의회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 규정 (안 제3조)
- 협의회 설립 절차 규정 (안 제4조)
- 협의회와 기관장과 협의회에 관한 사항 규정 (안 제10조)
- 협의회 전임공무원의 금지 (안 제14조)

□ 검토의견

법령 적합성 검토

- 동 조례안은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7조에 의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생각됨

내용적 타당성 검토

-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은 1998년 2월 노·사·정위원회의 합의사항으로 그동안 금지되었던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단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임
- 동 조례안에 따르면 직장협의회 가입 대상자가 상당히 제약되어 있으나 이는 상위 법령에서 상세히 규정되어 사항임
참고적으로 파주시의 경우 총 직원 852명중 가입대상자는 595명으로 파악되고 있음
- 공무원 직장협의회는 필요성 및 기능에 대해서는 일부 우려의 시각이 있음 공무원 직장협의회가 일반 사기업체 노조의 부정적 기능을 재현할 것이라는 것임
- 그러나 공무원 직장협의회는 일반 사기업체 노조와는 그 성격 및 권한이 다른 것으로 직장협의회를 활성화하여 이를 시정발전을 위한 아이디어 창출과 하위직 직원들의 의견 수렴을 위한 협의회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
- 현재 기초자치단체로는 청주시, 광역자치단체로는 대구광역시와 광주광역시에서 직장협의회가 최초로 설립되었음.
경기도의 경우 31개 기초자치단체중 20개 기초자치단체가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를 제정하였고 직장협의회가 설립된 곳은 아직 없음